

動產文化財 登錄과 典籍文化財 保護

金 田 培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事務所長)

目 次

1. 序 言
2. 動產文化財 登錄
 - 가. 登錄의 重要性 및 法的根據
 - 나. 文化財의 登錄基準
3. 典籍文化財의 保護
 - 가. 典籍文化財의 綜合調查
 - 나. 個人所藏品의 國家買入
 - 다. 原本의 保存

1. 序 言

近間 東國正韻을 爲始하여 典籍 御筆 佛經 繪畫 등
貴重한 典籍文化財의 發見으로 學界나 一般의 注目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過去 우리文化의 優秀性에 대한 舉
證이 하나하나 添加되고 있다.

그 뿐이랴, 武寧王陵, 青銅遺物 및 日本 良奈縣의
高句麗古墳壁畫 등의 發見으로 우리 文化史上의 補完
作業이 着實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는 過去 여러차례의 兵火로 많은 文化財를 잃었
고, 그때마다 侵略國에 의하여 無數히 掠奪되어 왔다.
그러나 文化財 保存의 真實한 敵은 兵火만이 아니다.
우리들自身의 無知와 無關心과 意識의in 陳外가 過去의
모든 文化財를 이 땅에서 消滅시킨 보다 直接的인
原因인 것이다. 그 實例는 일일이 列記할 必要조차 없
을 것이다.

이제 이 땅에도 典籍文化財 保護에 대한 赤信號가 읊
혔다. 政府에서도 文化財 保護法을 改定 補強하여 文化財의 海外輸出을一切 禁止하였고, 動產文化財의 登錄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最近 典籍調査三個年計劃을樹立着手하는 등 보다 強力한 文化財 保存政策을 施行하고 있다. 이것은 近間의 세로운 刺戟으로 찾으면 發見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示唆하였기 때
문이다.

때마침 文化財愛護 凡國民運動으로 文化財 알기, 찾

기, 가꾸기 運動이 展開되고 있으니 이러한 契機에 瞥面한 우리圖書館人の 使命은 자못 크다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典籍文化財의 調査 發掘 保存은 勿論 이를 整理 開發하여 學術研究에 必要한 與件을 造成함으로서 資料의 活用度를 높이고 文化發展을 促進시키는 것은 우리 圖書館人에게 賦課된 使命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使命을 自發的으로 遂行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러한 使命을遂行하는데 있어서 우리 圖書館人이 알아야 할, 最近에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動產文化財登錄의 必要性과 法的根據 및 典籍文化財의 登錄基準을 略述하고 典籍調査 3個年計劃을 中心으로 典籍文化財 保護對策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2. 動產文化財 登錄

가. 登錄의 重要性 및 法的根據

문화財는 어느 一個人의 所有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勿論 自己의 所有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所有權 以前의 問題가 있다. 文化財는 그 民族固有의 文化遺產이며, 그 民族의 生成發展의 過程을 說明하여 주는 산 證據物인 것이다. 따라서 文化財는 그 民族乃至는 그 國家와 運命을 같이하는 歷史共同體라 할 수 있다. 民族固有의 文化財가 없이는 그 民族의 歷史를 舉證하기 힘드는 것이니, 오늘 날 文化財를 通해서만 過去 그 民族의 文化水準을 立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半萬年の 오랜 歷史를 享有하는 등안 많은 文化遺產을 祖上들로 부터 물려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물려받은 文化財를 잘 아끼고 가꾸어 우리의 後孫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文化財가 一般 物件과 区別되는 特殊性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特殊性 때문에 「文化財保護法」이라는 物別法을 制定하여 그 保護管理에 當하고 있는 것이다.

文化財를 잘 보호管理하기 為하여는 優先 관리行政의 客體인 文化財의 種類, 數量, 所在地, 所有者 및 그 관리現況을 正確히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種類의 文化財가 열마나 누구의 所有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어디에 어떠한 狀態로 存在하는가 하는 것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고는 完全한 保護管理對策을樹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動產文化財登錄의 重要性이 擡頭되게 되는 것이다.

不動產文化財의 경우 이미 第一次 全國地表調查를 完了하여 그 目錄이 發表되었다. 動產文化財의 경우도 第一次 登錄期間(1971. 1~1972. 2)이 滿了되어 42萬餘點의 登錄을 받았고 第二次 自進登錄期間(1972. 3. 1~6. 30)을 設定하여 未登錄分의 登錄을 勸獎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動產文化財登錄의 重要性을 整理하여 보면

첫째 文化財 保護管理의 行政客體를 完全히 把握하여 保護對策樹立을 可能케 하고 登錄時 專門家에 의한 鑑定을 받게 되므로 個個에 대한 正確한 評價를 받을 수 있으며 또 數百萬點에 達하는 文化財의 目錄이 發表되므로 해서 世上에 公開되지 않은 大多數 文化財가 學術研究資料로서 學界에 提供될 뿐 아니라 이것을 通하여 文化民族으로서의 自負와 矜持를 世界에 立證할 수 있다.

둘째 文化財의 海外流出을 防止할 수 있다. 一旦 文化財로 登錄을 하게 되면 登錄證을 交付받게 되고 文化財의 賣買 등으로 因한 所有者 등의 變動이 있을 때에는 30日以內에 當局에 申告하고 登錄證에 變動事項을 記載하고 確認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移動狀況을 當局에서는 쉽게 把握할 수 있으니 海外流出은 自動的으로 防止된다. 現行法으로 보면 輸出할意思가 없는 國내에 居住하는 外國人에게는 自由로 賣渡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次後 外國人에게는一切 賣渡하지 못하도록 法을 補強하겠다는 文公部의 發表가 있었다.

셋째 盜掘을 豫防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一旦 登錄이 끝나면 個個의 文化財登錄畢證을 貼付하게 된다. 따라서 登錄期間이 經過한 後 動產文化財登錄畢證이 貼付되어 있지 않거나 非文化財를 表示하는 證明調查畢證이 貼付되어 있지 않은 것은 不法文化財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登錄을 忌避하거나 登錄期間이 滿了된 後에 盗掘한 文化財임에 틀림없다. 두 가지 경우 다 雖然 한 法의 處罰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盗掘行爲가 根絕되리라고 본다. 現行施策은 登錄期間內에는 그 文化財의 出處를 追窮하지 않으므로 此際에 陽性化 시키는 것이 좋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넷째 文化財의 所有者나 一般國民이 文化財의 重要

性을 認識하게 된다. 文化財登錄에 대한 啓蒙을 行政組織을 通해서 市, 邑, 面, 里, 洞 単位까지 行하고 있으므로 文化財에 대한 識見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物件에 대하여 一旦 생각해 보게되고 또 이웃에 물어 볼 기회가 自然的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文化財登錄에 대한 啓蒙을 通해서 觀心파自覺을 부여하게 되니 그 重要性을 自然히 理解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文化財登錄에 관한 現行法의 根據를 살펴보기로 한다.

文化財登錄에 관한 規定은 1970年 8月 10日 法律 第2233號로 改定公布된 文化財保護法에 新設된 條項이다.

同法 및 施行令의 關係條文을 다음에 要點만 列舉하기로 한다.

法第41條의 6(文化財의 登錄) 動產에 屬하는 文化財는 그 所有者(所有者가 없거나 不明한 때에는 點有者)가 施行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令第25條(一般動產文化財의 登錄) ①登錄對象文化財는 典籍, 書跡, 板木, 繪畫, 彫刻, 工藝品, 古考資料, 民俗資料이며, 取得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登錄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文公部長官은 申請된 것이 文化財로 認定될 때에는 動產文化財登錄臺帳에 記錄한 다음 申請人에게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③登錄을 한 者가 그 登錄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30日以內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登錄臺帳은 文化財管理局에 備置한다.

法第70條(其他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징역 또는 10萬원以下의 벌금에 處한다. 1~9號省略.

10. 第41條의 6의 規定에 違反한 者.(註 法第41條의 6의 規定은 文化財의 登錄에 관한 規定임).

나. 文化財의 登錄基準

文化公報部令 第19號 文化財保護法 施行規則 第26條에 規定된 登錄範圍는 歷史上, 學術上 또는 藝術上 保存價值가 있는 文化財로서 다음과 같다.

典籍類……①壬辰倭亂(1592—1598) 以前의 書籍, 文書 및 印本 또는 寫本.

②丙子胡亂(1936—1937) 以前의 各種 活字本.

③1910年 以前의 金屬活字에 의한 初印本 또는 이에 가까운 稀貴本.

④1910年 以前에 作成된 한글書籍, 文書, 印譜,

⑤1945年 8月 15日 以前에 作成된 各級 管署의 公文書 및 帳籍

⑥歷史上 名人의 文集 및 隨錄類의 原稿本.

書跡類……①歷史上 名人이 親筆 또는 帝王의 御筆

②1910年以前에 作成한 摄影物.

板本類……①1910年以前에 彫刻乳 板木類.

②1910年以前에 製作된 扁額, 柱聯 및 揭板.

③1910年以前에 彫刻된 印章類.

繪畫類……1910年以前에 製作된 作品으로서 그 畵格이 高고 技法이 卓越한 것.

彫刻類……1910年以前에 彫刻된 佛像 등 作品으로서 그 技法이 卓越하고 樣式이 特異한 것.

工藝品類……1910年以前에 製造된 陶藝品, 木工藝品, 金屬工藝品, 玉石 또는 硝子工藝品, 纖維 또는 紙工藝品 및 其他 工藝品으로서 技法이 卓越하고 樣式이 特異한 것.

考古資料……①統一新羅時代 以前 考古資料로서 形態가 完全한 金屬遺物, 石器, 瓦當, 塼, 土器, 骨角器, 木器, 玉石工藝品 등.

②形態가 不完全하나 出土地가 確實하고 二點以上 또는 二種以上을 包含하는 一括遺物 또는 斷片.

民俗資料……1910年以前의 民俗資料로서 大韓民國의 基本的 特殊文化의 特色을 나타내는 遺品으로서 衣食住, 生產生業, 交通, 通信, 交易, 社會生活, 信仰, 民俗知識 및 藝能 등에 관한 資料.

其他……①外國에서 製作 또는 發掘된 作品으로서 우리나라 文化에 直接 影響을 주었거나 또는 學術上 重要한 意義가 있는것.

②作故한 名人 또는 工藝技術部門의 重要 無形文化財의 保有者의 作品中 代表的인 것.

以上에서 動產文化財登錄의 重要性, 現行法의 根據 및 登錄基準을 살펴보았다.勿論 여기에도 問題點은 許多히 있다. 한두개의 例를 들면 첫째 1910년의 問題다. 時代의인 下限線을 1910年으로 잡은 것은 韓日合邦과 더불어 日人們의 간섭으로 우리 民族固有의 文化는 主體性을 잃었고 또 이를 契機로 日人们이 豐은 文化財를 收奪해 갔으므로 自然 1910年 以前의 資料가 稀貴하게 된 것이 그 重要한 原因이라 하겠다. 그러나 1910年 以前에 製作된 것이라 하여 全部 貴重資料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勿論 登錄基準에는 “技法이 卓越한 것”이라 明示되어 있으나 鑑定하는 사람의 見解에 따라서甚한 差異가 있는 것은 우리가 實務에서 늘 겪어 오는 險路인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한 解決方案으로는 우선 1910年 以前에 製作된 것은 全部 登錄申請을 받아놓고 合同鑑定班을 編成하여 慎重을 期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일 것이다.

둘째 文化財指定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現在指定文化財數는 겨우 1,176點에 不過하다. 그러나 이웃 나라 日本만해도 萬點이 넘는 실정이다. 現行法의指定名稱은 動產文化財의 경우 國寶, 寶物, 重要 民俗資

料뿐이나 보다 下位의 指定名稱을 設定하여 大量 指定함으로써 強力한 法의措置를 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珍貴한 文化財를 無數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指定 公布하지 못하고 있음은 人類文化史上 우리가 占有하는地位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結果가 되지 않을가. 政府에서는 1970年度 文化財保護法改正時 地方文化財를 指定할 수 있도록 法의根據를 마련하고 各 市道에서는 市道文化財를 많이 指定하고 있음은 좋은 結果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市郡文化財 指定에 이르기 까지 계속적인 改善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秘藏되었던 文化財가 陽性化되므로 財產稅上의 問題가 대두된다. 우선 動產文化財의 評價에 따른 財產稅가 賦課될 우려가 있으며, 去來에 따른 所得稅 및 相續에 따른 相續稅가 우려되어 登錄을 固意로 忌避할 可能性이 있으면서도, 反面 動產文化財가 貴重한 財產으로서 銀行융자 등의擔保가 되지 못하고 있는 點이다. 이 點에 대하여도 綿密히 檢討하고 關係 部處와 協助하여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하도록 措處하여야 할 것이다.

이以外에도 豐은 問題點이 있으나 典籍文化財 保護對策을 살펴보면서 舉論하기로 한다.

3. 典籍 文化財의 保護

前章에서 動產文化財 登錄에 대한 全般的인 内容을 檢討해 보았거니와 이 章에서는 典籍文化財의 保護對策에 대한 몇 가지 方案을 講究해 보고자 한다.

가. 典籍文化財의 綜合調查

文公部 文化財管理局에서는 典籍綜合調查 3個年計劃을 樹立하여 1972年度를 起點으로 이미 그 調查에着手했다. 國內外에 散在한 資料 422,700部 1,669,300책(추계)을 對象으로 1972년 3월 1일부터 1974년 12월 일에 끝나는 同計劃은 國內의 各 圖書館, 書院, 鄉校, 寺刹 및 個人所藏品의 調査를 爲主로 하여 動產文化財登錄의 一環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이 事業에는 文化財委員會 中心의 書誌學者가 動員되고 있다. 늦은 晃은 있으나 適時에 수립된 보람있고 劃期的인 政府施策中の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典籍綜合調查의 基本的인 意義를 考察하여 보면 動產文化財登錄에 있어 典籍分野만은 앉아서 申告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調査해서 登錄하는 積極的인 方法을 講究한 것이다. 따라서 國내外에 散在한 典籍의 所在를 把握하고 새로운 典籍을 調査發掘하여 體係있게 整理하므로써 諸般 學術資料로 提供함은勿論 典籍文化財로서 國家의 保護對象을 確定하며, 또 우리 文化의 真面貌를 찾아내고 이를 通하여 文化民族로서의 自負와 猶持를 다짐하는 한편 人類文化史上 우

리文化의 位置를 浮刻시켜 過去 日人们에 의해서 歪曲捏造된 分野를 바로잡음으로써 우리文化의 國際的인地位를 向上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 專門家의 確保와 行政要員의 專門性 問題다. 外部人事를 動員할 경우 多方面으로 最高專門家가 參與할 수 있다는 長點은 있으나 각個人의 私情때문에當局에서 必要로 할 때 動員이如意치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늘 實務에서 經驗하는 隘路인 것이다.

따라서 當局에는相當數의 常勤專門要員을 確保하고 몇 개의 「팀」을 構成하여 同調查를 專擔遂行하도록 하되, 問題點이 있을 경우 外部 專門家를 招聘하여 解決하도록 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그러나 常勤 專門要員의 確保는 언뜻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容易한 問題는 아니다. 왜냐하면 人材難도 있는 하나적은豫算으로 많은 事業을遂行하여야 할 國家의 인要求가 作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報酬나 地位面에서 越等한 待遇를 한다면 어느 정도 容易하겠으나 典籍은 全體文化財의 一部分이기 때문에 限定된 예산에서 典籍 調查에만 많은豫算을 投入할 수 없는 形便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專門要員의 確保가 아주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나는 專門家養成問題를 提議한다. 勿論 長期의 인 國家의 眼目으로는 教育機關을 設置하여 重點적으로養成하여야 할 필요가 切實함은 再言할 餘地가 없지만 우선 應急措置로 基本의 인 素養이 있는 人員을 確保하여 一定期間訓練과 實習으로 必要한 知識을 習得할 수 있도록 措處하는 것이다. 例컨대 各大學 圖書館學科卒業生中에서 選拔訓練시키는 것 등이 이에 該當될 것이다. 此際에 圖書館學教育에 對하여 一言하고자 한다. 現在 圖書館學教育은 西洋書나 新刊書를 中心으로 한 分類整理나 이에 관한 現實의 인 分野에만 置重하고 있어 學部出身者は勿論 大學院過程履修者도 極小數人을 除外하고는 古典籍整理에 손도 끗 대는 實情인 것이다.

이에 文敎當局은 이러한 教科課程上の 虛點을 빨리補完하여 國家의 인 要請에 副應하는 必要한 人材養成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行政要員의 專門性과 使命感 問題다. 우리가 말하는一般的인 專門家는 그 學問分野의 專門家일 뿐이지 그 分野에 대한 國家의 施策乃至 行政處理에 관하여는 別로 造詣가 없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綜合調查를 成功의으로遂行하기 為한 綜合計劃은 行政要員의 任務요, 또 훌륭한 計劃을樹立하기 為하여는 그 事業遂行에 隨伴하는 基本의 인 問題點을具體의으로 把握하고 있어야 하며, 이 問題點을 把

握하기 為하여는 關係分野에 一定期間 從事하여야 하므로 專門性의 要求가 不可避한 것이다, 또 專門의 素養이 있는 行政要員의 使命感 있는 實踐 如何에 따라서 事業成果가 크게 左右되는 것도 우리가 實務에서許多의 經驗하고 있는 事實이다.

둘째豫想以外의 時日이 所要된다는 것이다. 上述한 바 있는 3個年 計劃에 의하면 動產文化財 登錄과 並行하여 1段階作業을 거쳐 3個年에 完了하게 되었으나 이 기간 내의 조사가 도저히 不可能하다는 事實이다. 勿論 當局의 計劃을 보면 各大學 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과 같이 自體에 調查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機關의 所藏本은 뒤로 미루고 書院, 鄉校, 寺刹 및個人所藏典籍을 優先하여着手하며 또個人所藏中에서도 大量藏所家나 流動性이 심한 古書商의 所藏品에 먼저 손을 뻔다는 것은 現實把握이正確하였고 基本의 인 問題點에着眼하였다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調查對象 422,700部, 1,669,300冊中個人所藏이라 할 수 있는 것은 國內 圖書館 所藏 및 國外 所在都合 118,000部 453,500冊을 除外한 304,700部 1,215,800冊에 達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專門家 1人이 1日 作業能力을 생각해 볼必要가 있다. 나의 經驗으로보면 3人으로構成된 一個組(基礎調查 2人, 最終檢討 1人)의 1日 作業能力은 30~50種을 調查한다고 볼 수 있다.個人所藏 304,700部中 同種의 典籍을 1/4로 잡으면 調查對象을 優先 228,525種이라 할수있다. 이렇게 생각할때 3人組 1個팀(1日作業量을 50種으로 봄)이 228,525種을 調査하려면 4,710日이 所要된다. 따라서 3個年內에 調査를 完成하려면 3人組 4個팀以上이 每日 쉬지 않고 作業해야 된다는 結論이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調査對象典籍이 一定한 場所에 適用되는 計算이므로 全國에 散在한 個人所藏 典籍調査에서는 2倍以上의 時間과 労力이 必要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所藏家의 協助問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世上에 알려져 있는 大量所藏家의 把握은 比較的 容易하나 各地方 구석구석에 死藏되어 있는 典籍이 問題點으로 檢頭된다. 勿論 政府에서는 動產文化財의 登錄을 서둘러 勸獎하고 있으며 地方行政組織을 通해서 最末端 里洞에까지 뻗히고 있으나 所藏家들의故意無知 또는 疊忽로 因한 非協助로 所期의 成果를 100%期待하기가 困難한 實情이다. 더욱이 典籍의 綜合調查에 있어서는 이러한 所藏家들의 能動의 인 協助와 參與없이는 短時日內에 이루어 지기가 困難하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이를 所藏家들이 積極의이며 自發의으로 本調查에 參與하도록 勸獎乃至는 刺戟하여야 할 것이다

다. 即 大量所藏家에 대한 補助金制度의 實施인 것이다. 典籍의 大量所藏家의 大部分은 斯界의 大家이거나 그에 대한 一家見이 있는 專門家라고 보아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一定額의 調查費를 補助하여 能動的으로 調查하도록하고 政府에서는 外部專門家와 提携하여 定期的으로 또는 調查者の 要請에 따라 隨時로 指導監督만하면 所藏家自身의 參與意識을 刺戟 仰揚시키고 豫算도 節減되며 不足되는 專門家의 機能을 擴大시킬수 있을 뿐 아니라 同時に 여러 곳에 作業이 進行되므로 比較的 短時日內에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個人所藏品의 國家買入

먼저 個人所藏 典籍을 國家에서 買入할 必要性 與否와 現行制度를 檢討하여 보기로 하자.

文化財保護法 第23條(賣渡의 制限)에 “指定文化財의 所有者가 그 指定文化財를 賣渡하고자 할 境遇에 國家 또는 博物館 등에서 買收를 願할 때에는 그에게 優先의 으로 賣渡하여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指定文化財의 國家 혹은 博物館 등의 展示機能을 갖춘 公共機關이 優先의 으로 所有하는 것이 옳다는 精神을 規定한 것이라 풀이 할 수 있다. 또 同法 第42條(發見申告에 依據 埋藏文化財를 申告하면 無主物의 境遇第47條 國庫歸屬과 補償金)에 依據 文化財로 判明되면 國庫에 歸屬하고 應分의 補償金을 支給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 規定 또한 文化財의 國家所有의 精神을 浮刻시킨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1972年度 文化財管理特別會計豫算에는 文化財買入費(補償金)가 2千餘萬원 計上되어 있는데 적은豫算이긴 하나 動產文化財(典籍包含)의 國家買入을 試圖하였다는 點에서 높이 評價하여야 할 施策中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까지는 大量의 購入活動을 推進하니 있지 못하고, 埋藏文化財 및 國家의 寄贈하는 文化財에 對한 補償金을 支級하는 程度에 머무르고 있다. 다음 文化財에 대한 國家買入의 必要性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첫째 海外流出을 防止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市中文化財가 많이 去來되고 또 外國의 觀光客이나 嗜好家들이 모여들어 값싼 우리의 文化財를 購得하여 海外로 密輸出한다는 것이다.勿論 政府에서는 1970年度 文化財保護法 改定時 動產文化財 輸出 등의 禁止條項(第41條의 3)을 新設하고 違反者에 대한 罰則(第59條)을 強化 規制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方案으로 動產文化財의 登錄條項(第41條의 6)을 新設 運營하여 海外流出防止에 많은 效果를 거두고 있음은 이미 紙上에 여러번 報道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制만으로는 海外流出防止에 萬全을 期할 수 없다. 그것은 没知覺한 國內人故意 또는 過失로 外國人과 結託하여 團束의 손길이 땅지 않

는 루트를 通해서 계속 密輸出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一面 보다 徹底한 團束을 強化하면서 流動文化財를 國家에서 買入하는 걸만이 文化財密輸出 防止의 接徑이라 할 것이다.

둘째 死藏된 文化財를 國家에서 買入하면 보다 管理를 徹底히 하고 博物館 등을 通한 展示活用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即 國家目的에 따른 活用이 容易하여 文化發展에 보다 더 寄與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購入價格의 問題다.勿論 政府에서는 評價委員會를 構成하여 公正하게 運營하고 있으나 評價額이 市中價格과 同價이거나 그 以上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家가豫算을 支出함에는 一定한 稅金을 控除할 뿐 아니라 또 稅源이 管轄 稅務署에 傳達되어所得稅가 賦課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가 아니고라도 우선 國家에 賣渡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認識을 一般國民에게 널리 周知시켜야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購入豫算의 不足을 들 수 있다.勿論 短時日內에 그 많은 文化財를 全部 購入하기란 期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流動文化中 海外流出 可能性이 있는 것은 早速한 時日內에 國家나 博物館에서 購入하도록 措置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려한 文化財를 優先의 으로 購入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하면 高價의 文化財를 少量 購入하느냐 아니면 低價의 文化財를 大量 購入하느냐 하는 問題다.勿論 類別에 따라서 先後가 決定되어야 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이러한 優先順位에 入脚하여 文化財를 購入함에 있어 高價의 것을 少量 購入하는 制度를 止揚하고 低價의 것을 大量 購入하는 制度를 採擇하여야 한다. 文化財의 國家買入動機의 하나가 海外流出防止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當然한 措置라 할 것이다. 아주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貴重한 文化財(國寶級)의 所在는 世上에 널리 알리져 있을 뿐 아니라 所有者自身이 잘 管理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管理狀態나 移動關係를 過히 念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價値가 特出하지 못한 文化財는 國家의 保護나 一般의 注意에서 疎外될 可能性이 많다. 또 外國의 嗜好家들이 즐겨 찾는 것은 이러한 對象에 不過한 것이다. 次後 文化財 購入行政에 있어 이점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다. 原本의 保存

古籍은 곧 重要文化財다. 이 重要文化財를 永久 保存하여야 함은 그 理由를 敷衍할 必要도 없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典籍은 늘 學術資料로 閱覽하기 때문에 本意아닌 汚損과 毀損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典籍文化財의 原本保存問題가 擡頭

보는 것이다. 이 問題點을 解決하기 為하여 몇 가지 保存方案을 提示한다.

① 마이크로필름 收錄保存

唯一本, 稀購本, 貴重本 등은 早速한 時日內에 마이크로필름에 收錄하여 活用함으로서 原本利用에서 오는 여러 가지 損耗를 防止하고 戰爭, 火災등의 灾害에 對備하여 內容 保全에 萬全을 期할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이것은 典籍文化財의 原本을 保存하는데는 가장 基本的인 急先務이며, 現在 많이 活用되고 있는 方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限界가 있으니 이의 活用에는 一定한 機械設施이 附隨되어야 하므로 活用이 自由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② 影印本의 活用

赤是 貴重本의 경우 影印本을 發刊 活用하여야 한다. 이것은 稀購資料나 唯一本의 復寫本을 손쉽게 求得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므로 現在 널리 活用되고 있으나 이것도 龙大한 資料를 一時에 影印 할수 없으며, 이에는 많은 豫算과 오랜 時日이 所要된다는 短點이 있다. 그러나 이 影印本 普及問題는 國策事業으로 大大

(30년에서 계속)

들이 갖는 文學史의 意義를 일관되 英文
學의潮流에 결부시켜 알기 쉽게 수록하
고 있다.

K840.9 D820.9

862 회곡

풀리에르

풀리에르 戲曲集 풀리에르作 金正鈞
鄭秉熙 共譯 瑞文堂 3月 286p 18cm
350원 (瑞文庫 22)

풀리에르는 프랑스의 古典喜劇의 完成者라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強制結婚〉 〈才致를 뽑내는 아가씨들〉 〈守錢奴〉 〈파르워프〉 등 그의 代表作品들로서, 프랑스 民衆들의 서민적인 감정과 전진한 精神을 거칠기는 하지만 생생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회곡들이다.

K862.081 D842.081

864 수필

까뮈, 알베

시지드스의 신화 알베, 까뮈著 林燦
奎譯 平和出版社 2月 281p 21cm 550
원 원서명 : Le Mithe de Sisyphé
이 책은 까뮈가 써트트르의 實存主義와는 다른 그의 부조리주의적 암장과 근본적인 강점을 확립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어떤 체계·기술적인 철학논문의 내용보다는 일종의 「옛세이」 형식으로서 그의 문학세계와 근본사상을 얘기하고 있다.

K864 D844

의인 봄을 造成하여 施行하면 學問發展 및 原本保存에 크게 寄與하게 된다.

③ 副本의 作成活用

卷冊數가 龙大한 典籍이거나 書跡 등의 資料를 除外하고는 副本을 作成活用하는 것도 原本保存에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특히 國寶, 寶物 및 이에 準하는 典籍文化財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書誌學의 研究以外의 境遇에는 많이 活用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大은豫算과 오랜 時日이 所要된다라는 短點이 있다.

④ 貴重本의 別途管理

이것은 圖書館 등과 같은 大量所藏家에게 該當되는 事業이다. 大은 文化財中에서 特히 重要한 것은 國寶, 寶物 등으로 指定하여 保護管理를 特別히 하듯이, 典籍文化財도 特히 貴重한 것을 貴重資料로 指定하여 別途 management해야 한다. 火災 등의 灾害로부터 保護되어야 할은勿論 通風, 採光, 溫濕度, 照明, 腐蝕 등에 對備 할 수 있는 特殊施設이 必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911 한국

成進文化社 편저

韓國學研究叢書(二) 成進文化社 3月
754p 26cm 6,000원

韓國學에 관한 연구자료로서 한국인에
대한 論說集은 물론 日本人에 의한 日本
語 學術文 등의 내용을 모두 수집하여
그대로 영인한 것이다.

내용 : 「三韓國과 그 法俗」「古代宗教思
想」「新羅建國事情考」「亡國百濟國民의
光復運動」「新羅六部考」(日)「高麗の奴
婢發生」(日), 「朝鮮の固有信仰」(日) 조
선佛教大觀 등.
K911 D95A

912 金義煥

韓國近代史研究論集 成進文化社 3月
1,068p 26cm 7,000원

10餘年에 걸쳐 著者자신이 우리나라
近代史를 公布하면서 各種 研究誌에 발
표한 16편의 논문을 그대로 여기에 한권
으로 끓어 影印, 수록한 것이다.

내용 : 初期 東學思想에 관한 연구, 辛未
年(1871) 李嗣濟 亂歿, 1892, 3年の 東學
農民 운동과 그 性格, 우리나라 開化 운
동, 日帝의 조선침략과 초기의 병 투쟁
歿, 丁未年(1907) 조선군대 해산과 反日
의 병 투쟁歿, 군대 강제 해산과 의병 학쟁,
韓末의 병 운동과 분석, 우리나라 近代技
術 教育史 연구, 韓末의 馬山浦事件과 露
· 日關係, 3·1 운동후 민족독립 운동의 성
격, 일제 治下의 衡平 운동歿, 부산시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그 성격, 부산군
대 교육사, 부산군대 공업 발달사 연구.
K911.059 D95A[059]

913 일본

全海宗·閔斗基

日本史 明書苑 3月 374p 圖 19cm 950
원

古代, 中世, 近世, 近代, 現代로 時代
區分하여 歷史的 事實의 闊관적 서술을
주로하고 해석과 평가도 첨부하였다. 特
히 第5編 現代日本에서는 政治·經濟面
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부록으로서는
系圖와 그림을 삽입, 皇室系圖, 日本地
圖, 國縣대조표, 時代區分 一覽表를 수
록하고 있다.
K913 D95C

919 아라브반도

金相珍

이스라엘·파와 땅의 나라—文明社 2
月 410p 21cm 사진 1,500원

독립선언, 4千年的 역사 연혁을 비롯
하여 파와 땅으로 결실을 찾는 이스라엘
국민의 개척정신과 근면한 민족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대인 宗教 및 宗敎
史(시온이즘), 聖都 예루살렘의 이모 저
모, 現代 이스라엘의 藝術文化, 이스라
엘의 民族精神, 六日전쟁의 전모와 다안
將軍人品·智略, 가장 훌륭한 鄉土豫備
軍組織, 沙漠과 이스라엘의 새마을 운동
—기보쓰, 모사브, 나한—, 현대 이스라
엘 농업부흥, 헛틀려와 六百萬 유대民
족의 회생,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의 主要內容을 수록하고 있다.
K919.4 D956.94